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운영규정

1995년 7월 21일 제정 1997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7월 9일 개정 2000년 5월 19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2002년 5월 10일 개정 2002년 7월 9일 개정 2004년 1월 29일 개정
2005년 1월 27일 개정 2006년 2월 2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8년 3월 18일 개정
2009년 3월 5일 개정 2010년 5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8일 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3년 4월 15일 개정 2014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4일 개정 **2023년 3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9조,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본부지부와 산하지부 운영 규정을 둔다.(개정2017.11.23.)

제2조(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이하 “본부지부” 또는 “의료지부”)라 하며, 사업소단위로 산하지부를 둔다. 단,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에 관한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의료노동조합 이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19.3.5., **2023.3.9.**) 영문 명칭은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dical Headquarters’ Branch(영문약칭 KMHB) 이라한다.(개정2017.11.23.)

제3조(사무소) 본부지부의 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사무소를 두며, 지부는 각 사업소에 사무소를 둔다.(개정2013.4.15., 2019.3.5.)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제5조(활동) 본부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본부지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 활동을 수행한다.(개정2013.4.15.)

- ② 본부지부는 본부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개정2013.4.15.)
1.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관련 사항
 2. 조합원의 고충처리
 3.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4.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5. 기타 처리해야 할 사항
 6. 기타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 ① 근로복지공단 직원(2년 이상 상시고용 직접고용 **공무직 포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개정2023.3.9.)
1. **공단직원으로서 2급 이상인 자 및 3급으로서 직제상 부장 또는 근무성적 평정 권한자(개정2011.3.8., 2023.3.9.)**
 2. **비서실 직원, 인사·노무·감사·경영전략·경영평가 담당자, 기획(국회)·이사회 업무 및 기획총괄 담당자, 소속병원의 인사업무 담당차장, 의사(개정2023.3.9.)**
 3. 본 노동조합과 가입범위가 중복되는 노동조합에 가입 한 자. 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이중 가입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2014.4.30., 2017.11.23.)
 4. 기타 “조합” 이 정하는 자
- ② (삭제2022.3.4.)
- ③ 제②항에 따른 가입거부의 절차는 조합 상별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되 그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가입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고 본 규정 제3장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2014.4.30.)

제7조(지부)

- ① 본부지부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이하 “산하지부”)를 둔다. 단, 30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7.11.23.)
1.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
 2. 근로복지공단의료 대구병원지부
 3. 근로복지공단의료 대전병원지부
 4. 근로복지공단의료 동해병원지부
 5. 근로복지공단의료 순천병원지부

6. 근로복지공단의료 안산병원지부
 7. 근로복지공단의료 연구소지부
 8. 근로복지공단의료 울산지부
 9. 근로복지공단의료 인천병원지부
 10. 근로복지공단의료 정선병원지부
 11. 근로복지공단의료 창원병원지부
 12. 근로복지공단의료 태백병원지부
- ② 산하지부는 각 호와 같이 운영 한다.(개정2017.11.23.)
1. 인재개발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울산지부, 강원케어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의료 태백병원지부, 경기케어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 서울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인천병원지부, 대전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대전병원지부, 광주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순천병원지부, **부산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료 창원병원지부에 포함한다.**(개정2020.5.14., **2023.3.9.**)
 2. 산하지부의 운영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부지부에서 직할 운영한다.
- ③ 기타 산하지부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개정2017.11.23.)

제8조(산하지부의 지위와 역할) 산하지부의 지위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개정2013.4.15., 2017.11.23.)

- ① 산하지부는 본부지부의 하부조직이다.(개정2017.11.23.)
- ② 산하지부는 지부장을 두며, 본부지부장 및 본부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개정2017.11.23.)
- ③ 산하지부장은 본부지부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지부장의 위임 내용 및 시기를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 ④ 산하지부는 해당 지역본부의 활동을 전개한다.(개정2017.11.23.)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개정2017.11.23., **2023.3.9.**)

- ①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②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③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 ④ 의견을 진술하고 조합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
- 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 ⑥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① 조합 및 본부지부의 선언과 강령 및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개정2017.11.23.)
- ② 조합 및 본부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개정2017.11.23.)
- ③ **조합 및 본부지부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개정2017.11.23., 2023.3.9.)**
- ④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⑤ 조합 및 본부지부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개정2017.11.23.)
- ⑥ 조합내의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11조(조합원 신분보장)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파면, 해임 및 해고된 경우에도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2017.11.23.)

- ① 퇴직, 사망 및 조합 활동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 ②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③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제12조(희생자 구제기금 및 유족지원금 지급)

- ① 조합원이 본부지부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본부지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결로서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4.15., 2016.3.24., 2017.11.23.)
 1. 피해보상기간은 해고 등 금전상 불이익을 당한 익일부터 복직 시 까지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전액을 조합에서 보상한다.
 3. 급여보상은 해고당시 3개월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합**에서 해고자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② 희생자 구제기금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복직투쟁을 하는 자
 2.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자(개정2017.11.23.)
- ③ 제②항의 희생자 구제기금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쟁의기금
 2. 본부지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특별적립기금(개정2013.4.15., 2016.3.24., 2017.11.23.)
 3. 특별 조합비의 징수
- ④ 해고 무효판결로 인해 복직 시 지급받은 기금은 본부지부로 전액 환급한다(개정2013.4.15., 2017.11.23.)
- ⑤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 받고 있는 해고 조합원은 반드시 본부지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전임활동을 수행한다.(개정2013.4.15.)
- ⑥ 조합원이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유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한다.(신설2012.3.26., 개정2013.4.15.)
 1. 유족지원금 지급대상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휴직자 포함).(개정2016.3.24.)

2. 조합원이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하며 그 원인을 불문한다.
3. 조합원 1인당 30,000원으로 하며, 조합원은 이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6.3.24.)
4. 유족지원금 신청은 가족 또는 소속 지부장이 본부지부장에게 유족지원금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그 집행에 대하여는 본부지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본부지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유족의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13조(회의) 본부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2016.3.24.)

- ① 총회
- ② 대의원회
- ③ 운영위원회
- ④ 상무집행위원회
- ⑤ 확대임원회(신설2016.3.24.)
- ⑥ 선거관리위원회
- ⑦ 회계감사위원회
- ⑧ 특별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본부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4.15.)

- ① 총회는 본부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7.11.23.)
- ② 총회소집은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 ③ 조합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2017.11.23.)
- ④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개정2017.11.23.)

제15조(소집공고) ① 본부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

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2016.3.24., 2023.3.9.)

② 본부지부 총회 공고내용은 산하지부마다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2023.3.9.)

제16조(의결사항) 본부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④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⑤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 ⑥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⑨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개정2021.3.23.)
- ⑩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개정2017.11.23.)
- ⑪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개정2017.11.23.)
- ⑫ 본부지부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개정2014.4.30.)
- ⑬ 상급조직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신설2023.3.9.)
- ⑭ 기타 중요한 사항(개정2023.3.9.)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4.15., 2016.3.24)

-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조합 대의원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부지부장이 소집한다.(개정2016.3.24., 2017.11.23., 2020.5.14.)
- ② 임시대의원회는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2016.3.24.)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개정2017.11.23.)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본부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개정2016.3.24., 2020.5.14.)
- ③ 조합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2017.11.23.)

제18조(소집공고) ① 본부지부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3.24., 2023.3.9.)

② 본부지부 대의원회 공고내용은 산하지부마다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2023.3.9.)

제19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개정2011.3.8.)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기준) 본부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4.15.)

① 본부지부 대의원은 지부조합원 15명당 1명 단위로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단수 10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② 본부지부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구역은 지부 상무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본부지부장은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대의원회의 기능)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④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⑤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⑥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⑧ (삭제)(개정2014.4.30)

⑨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개정2017.11.23.)

⑩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개정2017.11.23.)

⑪ 본부지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부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및 각 산하지부 지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2013.4.15.) 단, 운영위원 외 본부전임 간부는 참석하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개정2017.11.23., 2021.3.23.)

제22조1(대리참석) 산하지부장의 운영위원회 불참 시, 산하지부 임원 중 에서 대리참석이 가능하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신설2021.3.23.)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회의의 내용을 각 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부지부장이 소집한다.(개정2013.4.15., 2016.3.24.)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개정2023.3.9.)

- ①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②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 및 심의
- ③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상별건의에 관한 사항
- ⑤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 ⑥ 조정신청 승인과 쟁의대책 수립
- ⑦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⑧ 본부지부 부서국장의 임면동의
- ⑨ 증설되는 지부의 명칭과 기구의 결정
- ⑩ 희생자 구제대책에 관한 사항
- ⑪ 단체협약(안)에 관한 결정 사항(신설2020.5.14.)
- ⑫ 특별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⑬ 출장여비 세칙의 제정 및 개정(개정2017.11.23.)
- ⑭ 전임자 숙소관리에 관한 사항(신설2021.3.23.)
- ⑮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신설2021.3.23.)
- ⑯ 지침(규칙)의 제정 및 개정(신설2022.3.4.)
- ⑰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개정2017.11.23., 2021.3.23., 2022.3.4.)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본부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본부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 외 본부지부전임간부 및 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1.3.23.)

- ① 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소집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본부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2016.3.24.)
 1.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 상무집행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청할 시

- ②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은 본부지부장이 된다.

제26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2020.5.14.)

- ① 운영위원회로부터 수입받은 사항(개정2020.5.14.)
- ② 본부지부 제반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 ③ 본부지부 총회(대의원회의)상정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준비회의
- ⑤ 쟁의대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건의사항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확대임원회(신설2017.11.23.)

제27조(구성) 확대임원회는 본부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 외 본부지부전 임간부 및 각 부서국장, 각 산하지부장 및 산하지부 임원(부지부장, 사무장)으로 한다.(개정2019.3.5., 2021.3.23.)

제28조(소집) 확대임원회는 연회 이상 실시하며, 본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소집·운영 한다.

제29조(기능) 확대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산하지부별 의견수렴과 본부지부의 원활한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 논의
- ③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수석회계감사와 일반회계감사로 구성한다.(개정2016.3.24.)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제반회의에 제출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2016.3.24.)
- ③ 본부지부장과 산하지부장은 감사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개정2013.4.15.)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한다.
 1. 본부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 본부지부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개정2013.4.15.)
3.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6.3.24.)

제3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
- ② 본부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개정2013.4.15.)
- ③ 본부지부의 사업제반에 따른 재정 및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지부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한다.
(개정2013.4.15., 2016.3.24., 2017.11.23.)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소집 및 기능)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의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33조(구성) 본부지부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2017.11.23.)

- ① 본부지부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의 3분의2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의장은 본부지부장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특별위원회 의장을 본부지부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2013.4.15.)
- ②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부지부장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본부지부장이 임명한 특별위원회 의장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지부장에게 보고한다.(개정2013.4.15.)
- ④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사유가 해소 되는 즉시 운영위원의 3분의2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지도위원(신설2021.3.23.)

제34조(지도위원)

- ① 지도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지부장이 위촉한다.
- ② 지도위원은 전임 본부지부 지부장으로써, 조합원인 경우에 한 한다.

제10절 회 의(개정2021.3.23.)

제35조(성립과 결의) 본부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2011.3.8., 2016.3.24., 2021.3.23.)

제36조(특별의결) ① 동 규정 제16조 본부지부 총회 의결사항 ①항 중 본부지부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과 ③상급조직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로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2017.11.23., 2021.3.23., 2022.3.4., 2023.3.9.)

② 불신임 발의를 받은 자는 총회(대의원회) 소집공고일로부터 불신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되며, 징계는 정권 이상의 징계 시 권한이 정지 된다.(신설 2022.3.4.)

제36조1(임시의장 선출)(신설2022.3.4.)

- ① 동 규정 제16조 ①항 및 제17조 ②항에 의한 불신임안이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면 본부지부 임원은 동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 ② 총회(대의원회)는 본부지부 임원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위하여 총회(대의원회)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 때 의장은 당해 총회(대의원회)의 과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 본부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3.23.)

- ① 본부지부장 1명
- ② 본부지부 부지부장 2명(수석부지부장, 정책부지부장)(개정2019.3.5., 2021.3.23.)
- ③ 본부지부 사무국장 1명
- ④ 본부지부 회계감사위원 3명(수석회계감사 1명, 일반회계감사2명)(개정2016.3.24.)

제38조(임무) 본부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21.3.23.)

- ① 본부지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4.15.)
 - 1. 전국 산하지부를 대표하고 본부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본부지부의 국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 한다.
 5. 위임받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권 및 쟁의 제기권을 가지며, 조합 측 단체교섭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6. 본부지부 노사협의회 조합 측 대표자가 되며,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조합 측 위원회의 임면권을 갖는다.
 7. 본부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8. 본부지부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② 본부지부는 수석부지부장, 정책부지부장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3.5., 2021.3.23.)
1. 본부지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지부장 유고시 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 본부지부 정책부지부장 순으로 본부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2019.3.5., 2021.3.23.)
 2. 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본부지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지부장의 명을 받아 본부지부 각 부서의 업무를 지휘, 감독, 조정 한다.
 3. 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4. 본부지부 정책부지부장은 본부지부장의 명을 받아 각종 정책의 생산, 개발 추진을 지휘, 감독, 조정한다.(개정2019.3.5., 2021.3.23.)
- ③ 본부지부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 ④ 본부지부 회계감사위원회는 수석회계감사 1인과 일반회계감사 2인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4.15., 2016.3.24.)
1. 본부지부 회계감사는 연 2회 이상 또는 본부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의 결의가 있을 때 본부지부의 사업제반에 따른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지부장과 본부지부 총회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개정2016.3.24., 2017.11.23.)
 2.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39조(선출) 본부지부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3.23.)

- ① 본부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 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개정2017.11.23.)
- ② 정책부지부장의 임명동의는 본부지부 지부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개정2016.3.24., 2017.11.23., 2019.3.5., 2021.3.23.)
- ③ 본부지부 임원 중 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출한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통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한다.(개정2016.3.24., 2022.3.4.)
2. 1호의 3인 중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고 대의원의 재 추천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3. 회계감사위원회 중 수석회계감사는 최다 득표자가 된다.(개정2016.3.24.)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수석회계감사로 한다.(신설2020.5.14.)
4. 회계감사위원회 선거 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다.(개정2016.3.24.)
- ④ 위 항 에도 불구하고 무효입후보자<조합원(대의원)투표, 과반 미달자>는 재등록 할 수 없으며,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이 임기 중에 사퇴 혹은 공석 시 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신설2016.3.24., 개정2020.5.14.)
- ⑤ 본부지부 임원은 본인의 직위 이외에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개정2017.11.23.)
- ⑥ 보선
 1. 본부지부 임원 유고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0조(임기) 본부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부지부장은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1년차 해 1월1일부터 3년차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감사 3인은 3년차 해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정기대의원회의 당일까지로 한다. (개정2016.3.24., 2019.3.5., 2021.3.23.)

제41조(인수위원회)(신설2020.5.14., 개정2021.3.23.)

- ① 제39조 1항, 제40조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본부지부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기시작일 이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 ② 본부지부장은 인수위원회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2020.5.14.)

제42조(사퇴) 본부지부 임원의 사퇴는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2016.3.24., 2021.3.23.)

제 6 장 부 서

제43조(부서) 본부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을, 산하지부는 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4.15., 2017.11.23., 2021.3.23.)

- ① 정책기획국(신설2019.3.5.)
- ② 총무1, 2국(개정2017.11.23.)
- ③ 조직국(개정2017.11.23., 2019.3.5.)
- ④ (삭제2021.3.23.)
- ⑤ 교육국
- ⑥ 대외협력국
- ⑦ 선전국
- ⑧ 노동안전국
- ⑨ 성평등국(변경2019.3.5.)
- ⑩ 단체교섭국
- ⑪ 청년국(신설2019.3.5.)
- ⑫ (삭제2021.3.23.)
- ⑬ (삭제2021.3.23.)
- ⑭ (삭제2021.3.23.)

제44조(구성 및 운영) 각 국에는 부(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개정2017.11.23., 2021.3.23.)

제45조(국장의 임무) 국장은 본부지부의 임원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23., 2020.5.14., 2021.3.23.)

1. 정책기획국
 - 노동조합 각종 정책개발과 공약이행 점검, 노사관계 대응논리 개발,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총무국
 - 회계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3. 조직국
 - 조직확대, 현장활동 강화 및 조합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 활동사항
4. 교육국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교육과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5. 대외협력국
 - 타노조, 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6. 선전국
 - 각종 선정홍보 및 홍보 선전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7. 노동안전국

- 노동환경 개선과 조합원 직무보호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8. 성평등국
 - 성평등 대책 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9. 단체교섭국
 - 노동쟁의 활동 및 노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 청년국
 - 청년 조합원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 11. (삭제2021.3.23.)
- 12. (삭제2021.3.23.)
- 13. (삭제2021.3.23.)

제46조(국장의 임면) 국장은 본부지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부지부장이 임면하며, 사무직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지부장이 임면한다.(개정2013.4.15., 2016.3.24., 2021.3.23.)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7조(단체교섭의 권한)(개정2021.3.23.)

- ① 단체교섭(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포함)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본부지부장이 위임받은 단체교섭(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포함)에 대하여는 본부지부장이 권한을 갖는다.
- ② 단체교섭(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포함)의 본부지부 교섭위원은 본부지부장이 임명 한다.

제48조(단체협약의 심리체결) 단체협약(안)은 조합원의 의견수렴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제49조(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 ②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2020.5.14.)

제50조(쟁의행위의 결의) ①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 ② 본부지부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투쟁본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쟁본부의 장은 본부지부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투쟁본부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2020.5.14)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행위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51조(단체교섭의 체결) ①본부지부 단체협약(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합의안에 대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본부지부 조합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체결한다.(개정2016.3.24., 2021.3.23.)

② 단체협약(안) 및 임금협약(안)의 투표에 관한 모든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신설2020.5.14)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52조(의무금) 본부지부는 급여총액의 0.37%에 해당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조합에 납부한다.(개정2014.4.30., 2017.11.23., 2018.3.22., 2021.3.23.)

제53조(조합비 및 재정) 본부지부 재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2021.3.23.)

- ① 조합원은 매월 급여총액의 1%의 조합비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총액의 0.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의무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의무금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본부지부 55%, 산하지부를 45%의 비율로 나누어 사용한다.(개정 2014.4.30., 2017.11.23., 2018.3.22.)
- ② 본부지부의 재정은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개정2013.4.15., 2017.11.23.)
- ③ 조합원은 조합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범위 내에서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개정2016.3.24.)
- ④ 조합원이 조합비를 계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 또는 징계사유가 되며 규약 및 규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을 당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제명기간 중에 발생한 미납 조합의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2022.3.4.)

제54조(회계연도) 본부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2013.4.15., 2020.5.14., 2021.3.23.)

제55조(회계규정) 본부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13.4.15., 2021.3.23.)

제56조(자산의 관리) 본부지부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1.3.23.)

제57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본부지부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2021.3.23.)

- ① 본부지부는 매월 조합원 1인당 **3,000원**의 쟁의기금을 조합비에서 적립한다.
(개정2013.4.15., 2021.3.23., **2023.3.9.**)
- ② 본부지부는 매월 조합원 1인당 **500원**의 특별적립금을 조합비에서 적립하며,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단, 운영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2014.4.30., **2023.3.9.**)
 1. 각종 법률자문료,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개정2014.4.30.)
 2. 쟁의기금 또는 목적사업에 의거 발생된 기금 사용 시 부족금에 대한 전용비용(개정2014.4.30.)
 3.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 시 생계비용(개정2014.4.30.)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개정2014.4.30.)
- ③ 본부지부는 전임자숙소 당 매월 100,000원의 시설 수리비를 적립한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 ④ 본부지부에서 기타 운용 목적을 명시한 기금을 설치 할 때에는 본부지부 총회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⑤ 제①항에 의하여 적립된 쟁의기금은 쟁의행위 및 희생자구제기금 관련 외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부지부 총회 또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 할 수 있다.(개정2013.4.15., 2016.3.24., 2017.11.23.)
- ⑥ 제②항과 제③항 및 제④항의 기금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2.3.26., 2017.11.23., 2020.5.14.)

제58조(재정사업) 본부지부 재정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재정사업 이익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단 재정사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한다.(개정2013.4.15., 2021.3.23.)

제59조(운영규정) 본부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합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1.3.23.)

제6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거쳐 조합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개정2017.11.23., 2021.3.23.)

제61조(징계)(개정2021.3.23.)

- ①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78조(징계) 및 조합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산하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개정2014.4.30., 2023.3.9.) 단, 본부지부장(산하지부장은 조합 중앙위원회, 본부지부(산하지부)임원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개정2017.11.23.)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납부치 않았을 때(개정2017.11.23.)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우리 노동조합과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 ② 재심은 조합 규약에 따른다.(신설2017.11.23.)
- ③ 제①항의 징계의 내용 및 절차는 조합 상벌규정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2017.11.23., 2020.5.14.)
-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제①항 6호 사유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제명으로 하며 산하지부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2017.11.23.)
- ⑤ 징계대상자의 지위는 제①항의 각호의 당시로 한다(신설2020.5.14.)

제62조(조합원의 자격회복)(신설2022.3.4.)

- ① 조합원의 자격회복은 공단의 인사이동 등 보직변경으로 제6조 ①항에 의하여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그 발령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당연 회복된다.
- ② 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조합원 자격회복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의 조합원 자격회복요청(추천)서에 조합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해산) 본부지부의 해산은 본부지부의 재적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1.3.23., 2022.3.4.)

- ① 본부지부 해산 시 조합 보유 자산의 처리는 해산과 동시에 처리한다.
- ② 본부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64조(분할, 변경, 병합) 본부지부 및 지부의 분할 및 병합,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본부지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3.23., 2022.3.4.)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부지부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개정2017.11.23.)

제2조(경과조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는 2017년 11월 23일자로 “본부지부 또는 의료지부” 로 변경되며, 지부는 “산하지부” 로 변경된다.(개정2017.11.23.)
- ②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7조 12항 서울지부의 울산지부로 변경과 폐질환연구소의 인천병원지부로 포함은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한다.(개정2014.4.30.)
- ③ 2017년 11월23일자로 본 규정 제7조 1항에 의거 연구소 지부가 신설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조합이 승인한 날부터 한다.(개정2017.11.23.)

부 칙(2018.3.22.)

제1조(시행) 본 규정은 다음 항을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47조(의무금) 및 제48조(조합비 및 재정) 적용시기는 2018년 3월 23일 급여지급일을 감안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39조[임기] 본부지부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21년부터 3년으로 적용한다.

부 칙(2019.3.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9조와 관련한 연임제한 개정은 개정 당시의 본부지부장에게는 효력이 없다.

부 칙(2020.5.1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규정에 나오는 서식은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3.23.)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아래의 ①항을 제외하고,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57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항의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조합비 공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3.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아래의 ①항을 제외하고,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57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및 ②항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조합비 공제분부터 적용한다.

